



협회 일보



제802호

2023.5.30.(화)

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개정 사항 안내

- ◇ 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
- ◇ 사업주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 등 위험성평가 방법 수록

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위험성평가*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('23.5.22.)하였습니다.

*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란?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는 제도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 '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' 조치로 인정(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제3호 단서규정)

동 지침에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기업 사업장 노·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존 정기·수시평가 대신 월·주·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(주요내용 아래표 참조)

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, 실제 평가 사례, 질의회신 등을 수록한 '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'를 발간하였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또는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주요 내용
위험성 평가방법	•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포함한 빈도·강도법,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, 핵심요인 기술법(One Point Sheet)* 등 *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방법
위험성 평가시기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[최초평가]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>② [정기평가]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 적정성 재검토</p> <p>③ [수시평가] 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0%;"> <p>↔</p> <p>선택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>② [상시평가]</p> <p>(월간) 노사합동 순회점검, 아차사고* 분석, 제안제도 실시 → 평가</p> <p>* (예시)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사고가 날 뻔했지만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</p> <p>(주간) 합동 안전점검 회의 → 이행확인 및 점검</p> <p>(일간)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→ 공유</p> </div> </div> </div>